

---

## IV. 주요국의 공제사업 규제 제도<sup>34)</sup>

---

### 1. EU

#### 가. 공제사업에 관한 규제

EU에서는 보험사업자를 규제·감독하는 지침으로는 생명보험지침, 손해보험지침, 자동차보험지침, 보험중개업무지침, 재무감독에 관계된 지침 등이 채택되어 있다. 이들 보험지침에는 보험회사와 협동조합 및 상호조합 등의 상호단체를 기본적으로 같이 취급하고 있으나, 개별 조항에서는 완화조치 및 예외조치를 두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지침의 적용대상과 관련해서는 생명보험지침(2002/83/EC)과 손해보험지침(73/239/EEC)의 서문에 밝혀져 있다. 즉, 생명보험지침에서는 “그 법적 위치 부여에 의해 보장 기타 특정의 금전적 보증 요구에 대응하는 일정 상호단체는 이 지침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활동이 한정적인 분야만을 커버하는 것이고 단체의 정관에서 제한되어 있는 일정 조직에 대해서도 적용제외로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손해보험지침에서는 “상호단체(mutual associations) 중 그 법적 성격에 의해 사업의 안전성 및 재무상의 보증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이 지침의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였다.

사업면허와 관련하여 사업형태의 구분·정의는 각국의 역사적 경위와 법제도에 따라 다르나, 협동조합과 상호조합 등 상호단체도 원수면허보험업자의 사업형태로 되어 있다<sup>35)</sup>.

---

34)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2004), 石塚秀雄(2007) 등을 기초로 정리하였다.

## 〈표 IV-1〉 EU보험지침의 적용제외가 되는 공제에 상당하는 단체의 범위

생명보험지침	손해보험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부조기관(provident and mutual benefit institutions) 중 급부금이 보유재원의 다과에 의해 변동하며, 그 회원에 대하여 적절한 일정률의 기여금을 구하는 것이 행해지는 업무(제3조 2항)</li> <li>• 수리적 준비금에 의해 항시 그 지불의무가 보증되어 있는가 여부에 구속되어 사업체 내지는 사업체의 단체 또는 상업 내지는 상업단체에 속하는 종업원 내지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망 내지는 생존 또는 사업의 중지 내지는 축소에 즈음하여 급부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지침 제2조에서 규정한 생명보험사업자 이외의 자가 행하는 업무(제3조 3항)</li> <li>• 오직 사망 시에 급부하는 업무로, 그 금액이 사망자 1인당 평균장례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것, 또는 현물로 급부되는 것(제3조 5항)</li> <li>• 이하의 쌍방이 해당하는 상호단체(mutual associ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기여의 청구 내지는 급부금의 삭감 또는 급부를 인수한 다른 자로부터 지원을 구하는 것에 대한 정함이 정관에 있는 것</li> <li>- 연간 기여금 수입이 연속하는 3년간에 5백만 유로를 넘지 않는 것. 또한 연속하는 3년간에 연당 5백만 유로를 넘은 경우는 4년째부터 이 지침이 적용됨.</li> </ul> </li> </ul> <p>다만, 상호생명보험인수주체(mutual assurance undertaking)가 이 지침 하에 면허를 신청하여, 면허를 보유하거나 또는 면허의 인가를 얻는 것을 막지 않음(제3조 6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부조기관(provident and mutual benefit institutions) 중 급부금이 보유재원의 다과에 의해 변동하며, 기여금을 정률로 정하는 것이 행해지는 업무(손보 제1차 지침 제2조 제2항(b))</li> <li>• 법인격을 갖지 않은 조직이 보험료의 선불 또는 보험계약준비금의 적립을 하지 않고 회원 간에 상호보상(mutual cover)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업무(손보 제1차 지침 제2조 제2항(c))</li> <li>• 이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상호단체(mutual association) (손보 제1차 지침 제3조 1항), 손보 지급여력지침(2002/13/EC)제1조 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기여의 청구 또는 급부금의 삭감에 대하여 정함이 정관에 있는 것</li> <li>- 손해배상책임위험과 신용 및 보증위험의 인수를 하지 않는 것(다만, 손해배상책임 위험이 부수위험으로서 담보된 경우는 이 제한은 없음)</li> </ul> </li> <li>- 이 지침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연간 기여금수입이 5백만 유로를 넘지 않는 것</li> <li>- 이 지침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수입보험료의 1/2 이상이 당해 상호단체의 회원이 지불한 것일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가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모두 재보험 드는 계약, 즉 수재보험사업(concessionary undertakings)이 출재보험사업(ceding undertakings)을 대신하여 보험계약에 기초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정한 계약을 동종의 단체(other associations of this nature)와 체결한 상호단체(mutual association) (손보 제1차 지침 제3조 2항)</li> </ul>

자료: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2004), pp. 74-75.

〈표 IV-2〉 EU보험지침상 주요 가맹국의 원수면허보험사업자 사업형태

가맹국	원수생명보험면허사업자의 사업형태	원수손해보험면허사업자의 사업형태
영국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보증회사, 무한책임회사, 산업복리급부조합법에 기초하여 등록된 조합, 우애조합법에 기초하여 등록된 조합, 로이즈보험인수협회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보증회사, 무한책임회사, 산업복리급부조합법에 기초하여 등록된 조합, 우애조합법에 기초하여 등록된 조합, 로이즈보험인수협회
독일	주식회사, 상호보험조합, 공법보험회사	주식회사, 상호보험조합, 공법보험회사
프랑스	주식회사, 상호보험회사, 사회보장법전에 기초하여 등록된 복리급부기관, 농업법전에 기초하여 등록된 복리급부기관, 상호부조조합법전에 기초하여 등록된 상호부조조합	주식회사, 상호보험회사, 사회보장법전에 기초하여 등록된 복리급부기관, 농업법전에 기초하여 등록된 복리급부기관, 상호부조조합법전에 기초하여 등록된 상호부조조합
이탈리아	주식회사, 협동조합, 보험상호조합	주식회사, 협동조합, 보험상호조합
스페인	주식회사, 상호회사, 협동조합	주식회사, 상호회사, 협동조합
네덜란드	주식회사, 상호보험회사	주식회사, 상호보험회사
벨기에	주식회사, 합자회사, 상호보험단체, 협동조합	주식회사, 합자회사, 상호보험단체, 협동조합
아일랜드	유한책임주식회사, 유한책임보증회사, 무한책임회사, 산업복리급부조합법에 기초하여 등록된 조합, 우애조합법에 기초하여 등록된 조합	유한책임주식회사, 유한책임보증회사, 무한책임회사
덴마크	주식회사, 상호회사	주식회사, 상호회사
포르투갈	주식회사, 보험상호조합	주식회사, 보험상호조합
그리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상호보험회사
룩셈부르크	주식회사, 합자회사, 상호보험회사, 협동조합	주식회사, 합자회사, 상호보험회사, 협동조합

자료: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2004), p. 76.

그런데 협동조합과 상호조합 등의 상호단체를 포함하여 지침이 적용되는 보험사업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 필요 지급여력(required solvency margin)

이상의 지급여력을 가지는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필요지급여력의 1/3을 보증기금(guaranty fund)으로 하고 보험종목별로 정해진 최소 보증기금액을 하회해서는 안 된다<sup>36)</sup>. 이 최소 보증기금 기준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상호단체 및 상호적 조직(mutual-type associations)에 대해서는 1/4을 감한 금액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손해보험 1차 지침 제17조, 생명보험통합지침 제29조).

〈표 IV-3〉 유럽 주요국의 공제 관련 법률 및 조직형태

국가명	공제조직 관련 법	주요 공제조직, 연합회	
		원수 손해보험 면허사업자의 사업형태	원수 생명보험 면허사업자의 사업형태
오스트리아	보험감독법(1965, 1998), 공제조합에 대한 특별규정	-	-
벨기에	협회법, 보험회사법(1975), 공제조합연합회법(1990)	주식회사, 합자회사, 상호 보험단체, 협동조합	주식회사, 합자회사, 상호 보험단체, 협동조합
덴마크	보험업법(2001)	주식회사, 상호회사	주식회사, 상호회사
프랑스	보험법(1981, 1992), 공제조직법(1994, 2001), 농촌법(1984), 사회보장법(1994, 2002)	주식회사, 상호보험회사, 사회보장법전에 기초하여 등록된 복리급부기관, 농 업법전에 기초해 등록된 복리급부기관, 상호부조조 합법전에 기초해 등록된 상호부조조합	주식회사, 상호보험회사, 사회보장법전에 기초하여 등록된 복리급부기관, 농 업법전에 기초해 등록된 복리급부기관, 상호부조조 합법전에 기초해 등록된 상호부조조합
독일	보험감독법(1992), 장기간병보험개정법(2004), 질병공제금고법(1955)	주식회사, 상호보험조합, 공법보험회사	주식회사, 상호보험조합, 공법보험회사
이탈리아	상호부조조직법(1886), 공제조합법(1992, 1999), 민법(1942), 국민보험서비스법(1978)	주식회사, 협동조합, 보험 상호조합	주식회사, 협동조합, 보험 상호조합
아일랜드	지방자치체법(공제보험 법)(1926),	-	-

36) 손해보험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 항공기손해배상책임, 선박손해배상책임, 일반손해배상책임, 신용 및 보증의 최소 보증기금은 3백만 유로, 그 이외의 손해보험 종목에서는 2백만 유로로 규정되며, 복수의 보험종류에 속하는 위험을 인수하는 경우는 가장 높은 금액이 적용되는 보험종류의 금액이 채용된다. 또한 생명보험에서는 3백만 유로로 규정되어 있다.

	보험법(1936, 2000), 건축조합(building society)법		
포르투갈	보험법(2002), 공제조직법(1990), 공제조합회계법(1995), 사회적연대기관법(1983)	주식회사, 보험상호조합	주식회사, 보험상호조합
스페인	민간보험조직감독법(1995), 사회공제보험규칙(1985), 각 자치주법	주식회사, 상호회사, 협동조합	주식회사, 상호회사, 협동조합
스웨덴	보험사업법 (공제보험 규정을 포함) (1982)	-	-
영국	회사법(보증유한회사CLG규정 포함)(1985), 친목조합법(1974), 금융서비스시장법(2000), 건축조합(building society)법(1986, 1997), 공제조합시행령(2001), 신용조합법(1979)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보증회사, 무한책임회사, 산업복리급부조합법에 기초하여 등록된 조합, 우애조합법에 기초하여 등록된 조합, 로이즈보험 인수인 협회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보증회사, 무한책임회사, 산업복리급부조합법에 기초하여 등록된 조합, 우애조합법에 기초하여 등록된 조합, 로이즈보험 인수인 협회
네덜란드	민법(상호보험회사, 질병보험금고)(1989), 질병기금법ZFW(1999)	주식회사, 상호보험회사	주식회사, 상호보험회사
핀란드	보험회사법(1979)	유한책임주식회사, 유한책임보증회사, 무한책임회사	유한책임주식회사, 유한책임보증회사, 무한책임회사, 산업복리급부조합법에 기초해 등록된 조합
그리스	영리보험사업법 (1970, 1996 대통령령), 협동조합법(1984)	주식회사, 상호보험회사	주식회사
스위스	보험감독법(1978, 2003), 장기간병보험법	-	-
룩셈부르크	상호부조조직법(1961)	주식회사, 합자회사, 상호보험단체, 협동조합	주식회사, 합자회사, 상호보험단체, 협동조합

자료: 石塚秀雄(2007), p. 144.

## 나. 기타 정책사항

EC조약 48조의 정의 규정에서 협동조합 단체는 사업체로서 영리회사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EU 세제 관련 지침에서도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와 동등하게 적용받고 있다. 다른 가맹국의 모회사 및 자회사에 적용하는 공통 세제에 관한 지침(90/435/EEC)으로 모회사와 다른 가맹국에 소재하는 자회사 사이의 이익 배분과 관련된 과세에 대해 모회사가 소재하는 가맹국은 해당 모회사가 다른 가맹국이 자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이익을 모회사의 과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모회사의 세액에서 자회사의 납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동 지침을 채택할 경우, 많은 가맹국이 회사 범위에서 협동조합 등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동 지침에 의한 이점은 얻지 못했지만, 2003년 12월에 개정 지침(203/123/EC)이 채택되고 부표에 각 가맹국의 협동조합·상호조합 등이 추가됨으로써 보험회사와의 차이는 사라졌다.

## 2. 영국

### 가. 공제 규제 제도 현황

영국에서 공제(mutual)라는 말은 널리 비영리협동 조직의 총칭 및 상호부조의 정신·기능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공제조합(mutual societies)<sup>37)</sup>이라는 명칭이 법률적으로 처음 사용되는 것은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에서이다.

37)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도 이들 섹터를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표 IV-4〉 금융업 분야에 진출한 상호조합

조직 형태	개요	근거법	
		규제·감독	등록·사업범위
친목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질병보험 등을 취급할 수 있음</li> <li>• 자동차보험과 주택보험 등의 손해보험 종목은 취급할 수 없었지만, 1992년 친목조합법의 시행에 따라 친목조합의 법인화 및 자회사 설립이 인정되게 되어, 자회사를 통하여 광범위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음</li> <li>• 그러나 친목조합은 감소 경향에 있고 보험시장에서 위상도 크다고 볼 수 없음</li> </ul>	2000년 금융서비스 시장법 (FSMA2000)	1974년 친목조합법 (Friendly Societies Act 1974) 1992년 친목조합법 (Friendly Societies Act 1992)
주택 금융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목조합의 파생적인 형태로 봄</li> <li>• 업무는 주택 저당 대부, 예금 분야가 중심이며, 각각 약 20%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보임. 보험은 인수할 수 없지만, 일부 보험 판매하는 조합도 있음</li> <li>• 그러나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조합 수는 감소 경향임</li> </ul>		1986년 주택금융 조합법 (Building Societies Act 1986)
협동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상에서는 직업영역의 상호부조조직 및 생활협동조합 등과 같은 진정한(bona fide) 협동조합과 주로 회원 이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협동조합 2종류가 있음</li> <li>• 후자로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회사 형태로서는 아니고 협동조합으로서 등록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함</li> </ul>		1965년 산업복리 급부조합법 (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ies Act 1965)
신용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이 직업과 지역 등 공통된 관계로 연대되어 있으며, 저리 융자 대출, 예금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li> <li>• 기본적으로 직업과 지역 등의 점포도 직원도 없이 자원봉사 이사회에 의해 무보수로 업무를 하는 것이 특징임</li> </ul>		1979년 신용조합법 (Credit Unions Act 1979)

자료: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2004), p. 81.

이 법의 제XXI편 공제조합에 속하는 것으로는 친목조합(friendly societies),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ies), 산업복리급부조합(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ies), 신용조합(credit unions) 등이 있다. 이들 조직은 운영 취지와 회원제를 통한 비영리 조직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현재

의 조직형태로 변모하였는데, 보험을 인수는 주로 친목조합과 주택금융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친목조합은 「친목조합법(Friendly Society Act)」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1974년 법, 1992년 법), 2001년에 FSMA2000과 연계하여 친목조합이 한정적인 보험 사업을 하도록 개정이 있었다.

〈표 IV-5〉 친목조합에 대한 FSMA의 적용

구분	관련 항목
고수준 기준 (High Level Standar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inciple for Business: PRIN</li> <li>• Senior Management Arrangements, Systems and Controls: SYSC</li> <li>• Threshold Conditions: COND</li> <li>• Statement of Principle and Code of Practice for Approved Persons: APER</li> <li>• The Fit and Proper test for Approved Persons: FIT</li> <li>• General Provisions</li> </ul>
업무행위기준 (Business Standar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terim Prudential Sourcebook: IPRU</li> <li>• Conduct of Business: COB</li> <li>• Client Assets: CASS</li> <li>• Market Conduct: MAR</li> <li>• Training and Competence: TC</li> <li>• Money Laundering: ML</li> </ul>
규제절차 (Regulatory Proc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uthorisation: AUTH</li> <li>• Supervision: SUP</li> <li>• Enforcement: ENF</li> <li>• Decision making: DEC</li> </ul>
분쟁처리 (Redr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spute resolution Complaints: DISP</li> <li>• Compensation: COMP</li> <li>• Complaints against the FSA</li> </ul>

자료: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2004), p. 95.

「친목조합법」은 등록 및 사업범위 등에 관해서 적용되는데, 그에 따르면 자발적인 공제조직(voluntary, mutual organization)은 조합원에 대해서 장기보험계약<sup>38)</sup>과 손해보험계약<sup>39)</sup>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 규제

38) 여기에는 생명보험 및 연금, 결혼 및 출산에 관한 보험, 링크형 생명보험, 종신건강



는 FSMA가 적용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표 IV-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의 틀이 적용되어 친목조합에 적용되는 규제의 상세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IV-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친목조합이 공제사업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규제의 내용은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와 대부분 같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친목조합에 대한 감독의 주체도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청(FSA)로 되어 있다.

그리고 「주택조합법」(1986년, 1997년)에 의하면 그 사업의 중심은 주택자산을 위한 대부, 일반대부, 투자, 은행, 보험서비스를 할 수 있다. 보험업무를 행하는 비영리회사조직, 협회(association), 클럽(club)의 법적 형태로서 받아들여진 것이 보증유한회사(CLBG)(1985년법)인데, 주주가 아니라 보증인이다. 이에 대한 감독의 주체는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청(FSA)으로 되어 있다.

한편, 「산업복리금부조합법」에 의거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조직 중 협동조합의 형태로 보험을 인수하고 있는 유일한 조직으로는 협동보험조합(Cooperative Insurance Society Limited, 이하 C.I.S라고 함)이 있다. C.I.S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대부분의 종목에 걸쳐 영업을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은행(Cooperative Bank)과 함께 협동조합금융서비스(Cooperative Financial Service)이라는 중간지주회사<sup>40)</sup>에 속해 있다. C.I.S에 대한 감독의 주체도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청(FSA)으로 되어 있다.

보험, 토탈연금, 자금상환계약, 연금기금관리계약 등이 포함된다.

39) 여기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기타 재무적 손실이 포함된다.

40) 이 중간지주회사가 속한 전체 조직은 협동조합그룹(Cooperative Group)이다.

〈표 IV-6〉 영국의 친목조합과 보험회사 규제 제도 비교

구분	친목조합	보험회사
근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li> <li>• 1992년 친목조합법(법인친목조합)</li> <li>• 1974년 친목조합법(비법인친목조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li> <li>• 1985년 회사법</li> </ul>
감독관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감독청(FS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감독청(FSA)</li> </ul>
면허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허 필요(설립은 FSA 등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허 필요</li> </ul>
조직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4년 친목조합법에 기초한 비법인 친목조합, 또는 1992년 친목조합법에 기초한 법인친목조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회사 및 상호회사</li> </ul>
재무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회사와 동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분한 기금·자본금의 확보</li> <li>• FSA의 규정서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의한 지급여력비율의 유지</li> </ul>
상품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법인친목조합: 생명보험, 곤공사의 급부 등(회원 및 그 가족이 대상, 급부한도액 있음)</li> <li>• 법인친목조합: 장기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 없음(다만, 생존보 겸영 금지)</li> </ul>
모집체계 및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회사와 동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가업자·지정대리인이 모집할 수 있음(FSA의 규정서를 따르나, 손해보험 모집에 관한 규제는 2005년 1월부터)</li> </ul>
자산운용·투자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회사와 동일 (다만, 일정의 소규모 친목조합은 책임을 채우는데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좋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종류에 대응한 자산보유규제</li> <li>• 통화매칭·자산의 지역한정규제</li> </ul>
책임준비금의 적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립의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립의무 있음 - 미경과보험료·미경과위험·장기보험사업준비금 및 지불비금</li> </ul>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회사와 동일(다만, 일정의 소규모 친목조합은 대상에서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FSA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류의 제공의무 있음</li> </ul>
감독 및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보고: 장기보험은 매년, 손해보험은 3년에 1회 재무제표를 제출(단, 일정한 규모 이하의 조합은 3년에 1회 간이보고만)</li> <li>• 임점검사: 보험회사와 동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보고: 매년 FSA에 재무제표 제출</li> <li>• 임점검사: FSA의 규정서에 기초한 검사</li> </ul>
적기시정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회사와 동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여력에 관한 최저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FSA에 개선계획에 관한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함</li> </ul>

자료: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2004), p. 117.

## 나. 기타 정책사항

영국은 2001년 10월에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관리 및 여러 부문의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8개의 작업단을 만들어 사회적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살피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2년 7월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기업 성공전략(Social Enterprise: A Strategy for Success)』을 공표하였으며,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목적달성에 필요한 법 제정, 재정지원, 우수 사회적기업체 표창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재정지원기구(Funding Bodies)를 창설하여 창업자금을 증여금 혹은 시한부 대여의 형식으로 지원하고 투자주체에게 5%의 소득세 환급(Income Tax Relief)<sup>41)</sup>을 비롯한 대상 업체의 실적에 따른 면세 혜택을 더하여 이윤 배당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친목조합의 경우, 낮은 보험료로 저소득층에게 급부금을 지급하는 것이 친목조합의 기본적 이념임을 감안하여 100년 이상 전부터 세제상 우대조치를 받아왔으며, 경제적 약자인 조합원은 상부상조에 의한 상호이익을 증대시켰다. 한편, 잉여금은 조합원의 이용도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이에 대한 조세 부과는 면제이다. 현재 친목조합은 근본이념과는 다소 떨어져 일반 보험회사와 큰 차이는 없지만,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친목조합은 여전히 세제 우대조치 혜택을 받고 있다. 우대상품으로서 저축성이 높은 ‘비과세 저축 계획(tax-exempt savings plans)’ 생명보험 상품이 있으며, 친목조합 상품에서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조건<sup>42)</sup>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세제혜택 상품을 판매하는 친목조합에도 법인세에 대한 우대조치를 받기 때문에 대부분 친목조합

41) 재무부와 제3섹터청(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조직)은 공동으로 중소기업국 및 국세관세청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투자 세금 감면(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 및 다른 인센티브 제도들을 운영하여 사회적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개선하였다.

42) 적립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정기적으로 보험료 납부가 이뤄져야 하며, 이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월액으로 최대 25파운드의 보험료 상품과 연액으로 최대 270파운드까지의 보험료 상품일 경우에는 만기 시 이익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된다.

의 주력 상품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유사한 상품에 개인저축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상품이 있으며, 이것은 친목조합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 3. 독일

#### 가. 공제 규제 제도 현황

독일의 보험 규제감독은 1901년에 「보험감독법(Versicherungsaufsichtsgesetz: 이하 VAG)」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험감독법」에서는 보험이 보험계약자의 불의의 사고에 대응하는 것이며 장기에 걸친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보험자 이익의 충분한 보호와 보험계약에 기초한 채무이행의 확보가 보험감독의 중요한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VAG 81조).

〈표 IV-7〉 독일의 보험·공제 규제·감독의 개요

보험감독법 적용 여부	피감독기관의 유형
보험감독법 (VA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금융 감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국내에서 보험사업을 하는 민영 보험회사</li> </ul> </li> <li>• 주식회사</li> <li>• 상호보험조합: 대조합, 소조합(VAG 적용이 일부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주(州) 이상에 걸쳐 영위하는 공영보험회사<sup>1)</sup></li> <li>- 외국보험사업자</li> </ul> </li> <li>• 주 보험 감독 당국: 1주(州)에서만 영위하는 공영보험회사<sup>2)</sup></li> </ul>
보험감독법 적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별 조직·원조 단체</li> <li>• 상공회의소 연합</li> <li>• 기초지역 상공회의소 연합</li> <li>• 공법상의 단체</li> <li>• 지역적 활동</li> </ul>

주: 1) 민영회사, 2주 이상에 걸친 공영회사에도 경제적 중요성이 작으면 BaFin의 판단하에 주보험 감독 당국으로 이관할 수 있음.

2) 일정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BaFin 감독으로 이관할 수 있음.

자료: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2004), p. 121.

보험사업자는 연방금융감독청(이하 BaFin이라 함)의 감독을 받지만 경제적 중요성이 작은 것은 주(州)의 소관으로 하고 있어, 연방과 주에 걸친 두 개 기관이 보험감독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규제감독은 크게 개설규제와 계속적 감독으로 나뉘지만 개설규제에는 보험사업자의 형태를 주식회사, 상호보험조합, 공법상의 단체 및 시설로 한정하고 있다(VAG 7조). 한편 직업별 조직·원조단체, 상공회의소 연합, 기초지역 상공회의소 연합, 공법상의 단체, 지역적 활동에 대해서는 「보험감독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감독법」(VAG, 1992, 2005)에서는 제3편 상호보험조합(association)(VVG)(제15조에서 제53조까지)을 두어 공제조직에 관한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표 IV-8〉 독일의 상호보험 및 소조합에 대한 적용 법규

구분	상호보험조합 (주식회사와 기본적으로 동일)	소조합
근거법	• 보험감독법 외	• 보험감독법 외 단, 보험감독법의 일부 적용 제외 또는 적용 완화 있음
감독관청	• 연방금융감독청 또는 주감독청	• 연방금융감독청 또는 주감독청
면허요건	• 면허 필요 - 공증인에 의한 정관의 인증 - 자기자본 증명 - (생명보험)책임보험계리인을 선정	• 면허 필요 - 정관의 공증인에 의한 인증 불필요 - 자기자본을 증명할 필요 없는 경우가 있음 - (생명보험)책임 보험계리사의 선정 면제 있음
조직형태	상호보험조합(사단법인)	상호보험조합(사단법인)
재무요건	• 정관에 기금 명기 • 정관에 기금 상각 명기	• 정관에 기금 명기 - 다른 담보에 의한 대체 있음 • 정관에 기금 상각 명기 - 면제 있음
상품 규제	• 제한 없음 단, 생손보 겸영은 금지	• 제한 없음 단, 생손보 겸영은 금지
모집체계 및 규제	• 모집인의 등록·면허제도 없음	• 모집인의 등록·면허제도 없음
자산운용·투자규제	• 자산 운용 내용의 보고 의무 • 다른 기업으로 출자 제한·보고 의무	• 일반보험회사와 동일 단,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 있음
책임준비금 적립	• 적립 의무 있음	• 적립 의무 있음 단, 적용 면제되는 경우 있음
공시	• 결산서·사업보고서를 등기 법원에 제출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결산서·사업보고서 송부	• 결산서·사업보고서를 등기 법원에 제출 • 감독청이 검사할 경우는 계약자에게 정보 개시 면제
감독 및 검사	• 결산 감사인의 조사, 감독관청에 보고 • 감독관청 자신에 의한 감사는 필요	• 결산 감사인의 조사, 감독관청에 보고가 면제되는 경우 있음 • 감독관청 자신에 의한 감사는 불필요
적기 시정조치	• 감독청의 요청에 따라 지급 계획 제출 - 감독청에 의한 자산 처분 제도 - 계약 이전에 감독청의 인가를 필요로 함	• 추가 출자보험 청구제도 있는 조직 등은 조기 시정 조치 적용 제외임 단, 생명보험 등 일부의 사업을 하는 소조합은 일반 상호보험조합과 동일

자료: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2004), p. 139.

상호보험조합에 대한 규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5조에서는 VVaG를 “상호부조(공제) 원칙에 기초하여 조합원의 보험업무를 행하는 단체(association)”라 규정하고 있다. 제29조는 조합원 및 부과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2조의 조합원 부과금의 경감조치에 관한 조항에서는 「협동조합법」의 조문을 적용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3조는 ‘소규모상호(공제)보험단체(KVV)’에 대한 규정인데, 단체가 소규모인가는 감독관청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조합은 상호보험조합으로서 「보험감독법」에 기초한 감독을 받지만 그 사업은 경제적 중요성이 작고 보험종류, 지역, 보험 가입자의 범위, 활동범위 등이 한정되기 때문에 「보험감독법」의 적용이 일부 제외되거나 또는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

「보험감독법」 이외에 소조합에 관한 감독법규는 「보험계약법」(VVG: Versicherungsvertragsgesetz), 「보험제도를 위한 연방(금융)감독청 설치에 관한 법률」(BAG: 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s Bundesaufsichtsamtes für das Versicherungswesen), 「상법전」(Handelsgesetzbuch), 「민법전」, 「협동조합법」 등이 있다.

## 나. 기타 정책사항

소조합은 사법상의 법인으로 분류되지만 세제 등의 우대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법적 조직과의 차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 4. 프랑스

## 가. 공제 규제 제도 현황

프랑스의 경우 공제조직은 보험상호조합, 상호부조조합, 절약조합, 농업상호보험금고가 있다.

먼저 보험상호조합은 「보험법」(L322-26-4조)에서 상호보험회사의 한 형태로 정의되는데,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 비영리조합이다. 즉, ① 변액출자금의 지불에 의해 담보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채무의 전액결제를 조합원에 보장, ② 지역적 또는 동업적 성격, ③ 계약 획득을 위해 어떠한 중개자에게도 보수를 지불하지 않음, ④ 관리자 또는 이사에게 어떠한 보수도 지불하지 않음, ⑤ 정관에 정한 조건에서 그 조합원 사이에 수입잉여를 전액분배 등이다.

〈표 IV-9〉 프랑스의 공제 개요 및 근거법

구분	개요	근거법
보험상호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보험 이외의 상품을 취급하는 상호보험회사(Sociétés d'assurance mutuelles)의 일종이지만, 영업은 본점 소재지와 그 인접도에 한정되거나 혹은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모집 대상으로 한정하는 등 상호보험회사와 비교해 조합원의 유대감이 강함</li> </ul>	보험법 (code des assurances)
상호부조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의 공적 의료보험은 의료비의 약 75% 정도밖에 보장이 되지 않으며, 환자는 병원 등의 창구에서 일단 전액을 모두 지불한 후, 공적 의료보험 부분을 국가(병원 금고)에 청구함. 남은 25% 정도는 자기가 부담하기 때문에 자기부담부분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부조조합 등의 민간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는 사람이 많음</li> <li>• 직업별 상호부조조직을 그 기원으로 하여 질병보험의 자기 부담분의 보장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함</li> </ul>	상호부조조합법 (code de la mutualité)
절약조합 (Prévoy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협약에 기초해 사망, 질병, 상해, 출산, 취업불능, 고도장해 등의 보장을 제공하는 단체이며, 실업보장을 취급하는 단체도 있음</li> <li>• 직업 영역마다 참가해 공적 보험에서 담보되지 않는 부분의 보장을 담당하고 있음</li> </ul>	사회보장법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농업상호보험 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질병, 출산, 노령, 가족급부, 노동재해보험을 취급함</li> <li>• 각지의 지방금고가 부금을 보아 지방금고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금고에 담보 위험의 전부를 출채하고 지역금고는 중앙금고에 출채하고 있음</li> </ul>	농업법 (code rural)

자료: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2004), p. 141.



상호부조조합은 「상호부조조합법」(Code de la Mutualité, 1985년, 2001년, 2005년 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제1조에 해당하는 제L-111-1 조에서 “상호부조조합(mutuelles)이란 비영리 민간법인이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기여금으로 정관에 근거하여 위험의 예방(prévoyance)활동, 연대활동, 상호부조활동을 행하며, 조합원의 문화적·도덕적·지적·신체적 발전에 공헌하며, 조합원의 생활조건 개선에 공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의 목적으로서 ① 보험활동(사망, 사고, 질병, 결혼·출산, 저축 등 인간생활에 관한 대처, 생활부조, 주택대부, 실업수당), ② 실업, 장애, 가족, 노령, 수발 등의 리스크 예방, ③ 사회적 활동, 보건활동, 문화활동, ④ 「사회보장법」·「농촌법」(code rural)·국가 및 지방자치체에 의한 사회수당의 실시를 들고 있다.

또한 제L-112-2조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조직은 mutuel, mutuelle, mutualité, mutualiste를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보험회사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mutuelle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공제)회사(mutuelle d'assurance)는 「보험업법」의 적용도 받는데, 그 원칙은 1인 1표의 공제 원칙이 적용된다.

제L-112-3조에서는 사회보장제도에 편입된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법률·정관에서 그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맡은 공제조합은 「공제조직법」에 기초하고 있다. 이 제도를 위해 공제조직최고회의와 지방공제조직조정위원회가 존재하는데(2001년 시행령), 전국조직인 공제조직최고회의는 정부, 각 공제조합연합회, 노동단체, 의료관계단체의 57인 대표에 의해 구성된다.

‘절약조합’(intitutions de prévoyance)은 「사회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EU의 보험정책에 따라서 보다 보험회사적인 성격이 부여된다.

한편 상호보험금고(caisse)라는 명칭의 조직도 공제조직으로서 존재한다. 이 조직은 「농업법」 및 「보험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표 IV-10〉 프랑스의 보험·공제 유사 제도 개요

구분	보험상호 조합	상호부조 조합	절약조합 (Prévoyance)	농업상호 보험금고	일반보험 회사
근거법	보험법전	상호부조조합 법전	사회보장법전	농업법전·보험법전	보험법전
감독청	경제재정산업부(규제), 보험·공제감독위원회(감독), 보험기업위원회(인가)	고용연대성(규제·인가), 보험·공제감독위원회(감독)	고용연대성(규제·인가), 보험·공제감독위원회(감독)	보험기업위원회·농업담당성(인가), 보험·공제감독위원회(감독)	경제재정산업부(규제), 보험·공제감독위원회(감독), 보험기업위원회(인가)
면허 요건	면허 요함 300명 이상의 조합원 필요함	면허 요함	면허 요함	면허 요함 7명 이상의 가입자가 필요함	면허 요함
조직 형태	지역적·직업 영역적 연결을 갖는 상호조직	상호보험조직	직업영역이 연결고리로서, 노사협정에 의해 설립되는 상호보험조직	농업피용자·경영자에 의한 상호조직	주식회사 또는 상호보험회사
재무 요건	설립기금이 필요 (최저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일반보험회사와 동일	일반보험회사와 동일	일반보험회사와 동일	소정의 지급여력 및 미니멈개런티 펀드가 필요
상품 규제	생명보험을 운영할 수 없음	생명·질병·상해·연금 등	의료·상해보험, 생활 급부, 실업 급부	농업종사자의 의료·상해보험, 가족급부, 노동재해보험	약관 요율규제는 없지만, 보험종목마다 면허 취득 필요 단, 생·손보 겸영은 금지
자산운용·투자규제	일반보험회사와 동일	일반보험회사와 동일	일반보험회사와 동일	일반보험회사와 동일	투기적이지 않은 것에 한정 - 사채, 주식, 부동산 등
책임준비금적립	적립 의무 있음	적립 의무 있음	적립 의무 있음	적립 의무 있음	적립 의무 있음
공시	의무화되어 있음	의무화되어 있음	의무화되어 있음	의무화되어 있음	의무화되어 있음
감사 및 검사	일반보험회사와 동일	일반보험회사와 동일	일반보험회사와 동일	일반보험회사와 동일	서류상의 검사 및 출입 검사
적기시정 조치	일반보험회사와 동일	일반보험회사와 동일	일반보험회사와 동일	일반보험회사와 동일	보험·공제감독위원회에 의한 특별감사·재생 절차 있음

자료: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2004), pp. 158-159.

프랑스의 보험사업에 관한 규제를 하는 곳은 경제재정산업부(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이하 MINEFI)이다. 보험상호조합의 경우에는 보험과 마찬가지로 MINEFI의 규제를 받으며, 보험기업위원회로부터 설립인가를 얻는다. 상호부조조합 및 절약조합에 관한 규제를 하는 곳은 고용연대부(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du Travail et de la Solidarité)이며, 감독은 보험·공제감독위원회(Commission de Contrôle des Assurances, des Mutuelles et des Institutions de Prévoyance: 이하 CCAMIP)<sup>43)</sup>가 한다. 한편 상호보험금고에 대한 인가는 보험기업위원회 및 농업담당부가 공동으로 하며, 감독은 상호부조조합 및 절약조합과 마찬가지로 보험·공제감독위원회가 한다.

## 나. 기타 정책사항

보험회사, 상호부조조합, 절약조합 간에는 상품세제, 법인세제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으며, '보험계약에 대한 과세'는 종래에는 상호부조조합 및 절약조합이 판매하는 의료보험계약에 보험료세(세율 7%)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2002년 10월에 법이 개정되어 일반 보험회사와의 차이는 없어졌다. 그러나 상호부조조합과 절약조합이 판매하는 다른 보험상품(상해, 어시스턴스, 소송비용 등)은 보험회사에 의해 판매되는 상품과 달리 여전히 면세이다.

43) 보험·공제감독위원회는 보험감독위원회(Commission de contrôle des assurances: CCA)와 공제감독위원회(Commission de Contrôle des Mutuelles et Institutions de Prévoyance: CCMIP)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 통합된 것이다. 보험·공제감독위원회는 법인격을 갖는 독립된 공적기관으로 감독대상 조직으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함으로써 재정 면에서의 독립성을 갖고 있으며, 또 인사 면에서는 공법에 기초한 직원과 민법에 기초한 종업원이 병존함으로써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금융안전법」 30조).

〈표 IV-11〉 각 사업자간의 규제의 차이

구분	보험회사	상호부조조합	절약조합
상품에 대한 과세			
보험계약에 대한 과세			
질병리스크 그 이외의 리스크	과세/면세 <sup>1)</sup>	과세/면세 <sup>1)</sup>	과세/면세 <sup>1)</sup>
	과세	면세	면세
법인에 대한 과세			
법인세: • 수익 • 부동산 또는 비경영 참가 투자 증권의 매각익 • 경영 참가 장기 출자증권의 매각익 • 연간 건적 과제	• 33.33%+부과세 <sup>2)</sup> -2003년에는 34.3% 의 실효 세율	• 특정한 금융소득 에 한정된 과세 기초 - 24% 또는 10% (부과세 없음)	• 특정한 금융소득 에 한정된 과세 기초 - 24% 또는 10% (부과세 없음)
	• 19%+부과세, - 2003년에는 19.6% 의 실효세율	면세	면세
	과세	면세	면세
영업세	과세	면세	면세
급여세	과세	과세 <sup>3)</sup>	과세
도제세	과세	면세	면세
회사용 차량세	과세	비과세	비과세
부동산 취득 등기세	과세	과세	면세
준비금 초과 적립세	과세	비과세	비과세
금융기관세	과세	비과세	비과세
회사의 사회보장 연대 기여금	과세	비과세	비과세
법인소득에 기초한 사회보장 기여금 <sup>4)</sup>	과세	비과세	비과세

주: 1) 이른바 '연대'의 무보험은 제외함.

2) 2003년에 당 부과세는 보통법 세율로 산출된 세금의 3%를 나타냄.

3) 종업원 30명 미만의 상호부조조합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과세함.

4) 2000년도에 제정, 보통법에 기초해 계산된 법인세의 3.3%를 세액으로 함.

자료: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2004), p. 153.

## 5. 미국

### 가. 공제 규제 제도 현황

미국에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보험조직으로는 우애조합(Fraternal Benefit Society), 리스크교환조합(Reciprocal<sup>44</sup>), 자선기부연금(Charitable Gift Annuity), 복수고용주복지후생제도(Multiple Employer Welfare Arrangement), 리스크보유단체(Risk Retention Group) 등이 있다. 이들 보험조직을 규제하는 법률로는 각 주의 「보험법」 및 「공제보험법」, 「비영리회사법」(1986), 「내국세법」(IRC) 등이 있다.

먼저 각 주 차원에서는 「보험법」과 「공제보험법」이 공제조직을 규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텍사스 주 「보험법」(Insurance Code)상의 보험회사의 범주에는 리스크교환조합, 우애조합이 포함되어 규제를 받는다. 그리고 콜로라도 주의 경우 「비영리회사법」(The Revised Model Non-Profit Corporation Act(1986))이 공제를 규율하고 있다.

기타 연방 차원에서 전미보험자등록(National Insurance Producer Registry), 「의료선택법」(Health Care Choice Act), 「내국세제규칙」(Treasury Tax Regulation)이 공제조직을 규율할 수 있다.

#### 1) 우애조합

우애조합에 대해서는 전미우애조합회의(National Fraternal Congress of America: 이하 NFCA)<sup>45</sup>)가 작성한 「우애조합에 관한 보험모델법」(Model Fraternal Code: 이하 'NFCA모델법'이라 함)<sup>46</sup>)과 각 주의 「보험법」이 적용된다.

44) Reciprocal이란 '상호의', '호혜의'라는 의미이지만, Reciprocal 보험은 회원(subscriber)이 피보험자임과 동시에 다른 회원의 위험을 부담하여(리스크를 교환함) 붙여졌다.

45) NFCA는 1886년에 설립된 우애조합의 업계 단체이며, 본부는 일리노이주 네이퍼빌에 소재하고 있고 2004년 현재 회원 수는 76명이다.

〈표 IV-12〉 우애조합(Fraternal Benefit Society)에 대한 적용 법규

근거법	NFCA 모델법	뉴욕 주 보험법
감독관청	주 보험청	주 보험청
면허요건	면허 필요	면허 필요(NY 4502조)
조직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호보험조직(자본금 없음)</li> <li>로지시스템에 기초한 운영 및 대의원 통치 형태(NFCA모델법 1, 2, 3조)</li> </ul>	좌동(NY 4501조(a))
재무요건	기금설립 및 유지의무(NFCA 모델법 22조)	보험 급부를 위한 분리기금의 설정 의무(NY 4514조(a))
상품 규제	생명보험, 상해·의료보험(NFCA 모델법 16조)	생명보험, 상해·의료보험(NY 4505조(c), NY 4510조, NY 4512조)
모집체계 규제	보험 모집인은 면허가 필요함	보험 모집인은 면허가 필요함(NY 2103조, NY 4523조)
자산운용·투자규제	생명보험 회사와 동일(NFCA 모델법 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생명보험 회사의 투자규제에 덧붙여 다음 제한이 있음</li> <li>- 부동산 투자를 직접 취득하는 데 한정(NY 4514조(b))</li> <li>- 외국 투자의 지역·금액의 제한(NY 4526조(c))</li> </ul>
책임준비금 적립	규정 없음(NFCA 모델법 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립의무 있음(NY 4513조(a))</li> <li>- 표정(表定) 순보험료 평가액에 기초하여 산정</li> </ul>
공시	매년보고서를 보험청에 제출(NFCA 모델법 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보험회사와 동일</li> <li>- 연차보고서 및 보험채무의 평가 보고서를 제출(NY 4516조(a))</li> <li>- 간행물·신문이 있는 조합은 위 신청 후 60일 이내에 지면상에 공표(NY 4516조(c))</li> </ul>
감사 및 조사	보험청은 보험회사와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NFCA 모델법 28조)	적어도 3년에 1회(NY 309조, NY 4516조(d))
적기 시정조치	보험청 장관에 의한 미비 개선 명령, 업무 정지 절차 있음(NFCA 모델법 30조)	일단 보험회사와 동일(단, RBC 기준에 기초한 개입 없음)(NY 4521조)

자료: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2004), p. 56.

뉴욕주보험법(<http://public.leginfo.state.ny.us/lawsseaf.cgi>)

46) 「NFCA모델법」은 NFCA가 1892년에 각 주 보험청에 제공한 모델법이다.

## 2) 리스크교환조합

리스크교환조합에 대해서는 1902년에 뉴욕 주가 처음으로 그것을 보험의 한 형태로 규제한 이후 코네티컷, 콜롬비아 특별구, 미주리, 뉴햄프셔, 유타, 위스콘신을 제외한 45개 주가 리스크교환조합을 규제하는 「보험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각 주 보험청이 감독하고 있다. 또한 1912년에 NAIC가 리스크교환조합에 대한 법적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모델법(Model Indemnity Contract Act)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뉴욕주가 리스크교환조합에 대해 일반적인 손해보험회사와 거의 동일하게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모델법을 기초로 한 다른 주에서는 리스크교환조합에 대해 일반 손해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것보다도 완화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표 IV-13〉 리스크교환조합(Reciprocal)에 대한 적용 법규

근거법	NAIC 모델법	뉴욕 주 보험법
감독관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보험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보험청</li> </ul>
면허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 필요</li> <li>- 대리인의 권한을 명기</li> <li>- 100건 이상, 보험금액 총액 150만 달러 이상의 신청 (NAIC 모델법 3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허 필요</li> <li>- 사무대리인 설치(NY 6105조 (a))</li> <li>- 손해보험회사와 동일한 잉여금·공탁금 등(NY 6102조(i), 6102조 (a)~(c), 6103조(a),(d))</li> </ul>
조직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조합·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상호보험조합(법인격 없음)</li> <li>• 사무대리인이 필요함(NAIC 모델법 1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명 이상의 개인·조합·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상호보험조합(법인격 없음)</li> <li>• 사무대리인이 필요함(NY 6102조 (a))</li> </ul>
재무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에게 원칙적으로 5만 달러 이상의 자산 요건 (NAIC 모델법 1918년 수정 제1~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은 수익의 4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최저 영업 준비금으로서 적립 (NY 6109조(a))</li> </ul>
상품의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보험(생명보험, 상해·의료 보험, 의료보험 이외)(NAIC 모델법 1조, 5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보험(NY 6102조 (a), (g), NY 6108조(d))</li> </ul>
모집체계 및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계약자(회원)는 보험자가 되기 때문에 부과되는 불확정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고지(NY 6106조 (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확정 책임은 연간 보험료의 1~10배의 부과금이 부과(NY 6108조(a))</li> </ul>
자산운용·투자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 없음</li> </ul>	일반 보험회사와 동일(NY 1402조)
책임준비금 적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립의무 있음</li> <li>- 정미 연간 공탁보험료의 50% (25,000달러 이상)(NAIC 모델법 7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립의무 있음(NY 1305조)</li> <li>- 단, 영업준비금이 있음(총 연간 보험료의 두 배 수준 이하) (NY 6109조(a), NY 6111조(a))</li> </ul>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재무 상황을 보험청에 보고하나, 보고 내용을 공개할 의무 없음 (NAIC 모델법 8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보험회사와 동일(NY 307조)</li> <li>- 단, 특수한 경우의 불확정 책임이나 기타 잉여가 발생 시 관련 내용을 보고(NY 6111조(e))</li> </ul>
감사 및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규정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보험회사와 동일(NY 309조)</li> <li>- 단, 약관이 불공정하거나 수수료 등에 따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NY 6111조(f))</li> </ul>
적기시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규정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보험회사와 동일(단, RBC 기준에 기초한 개입 없음) (NY 7402조)</li> </ul>

자료: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2004), p. 57.  
 뉴욕주보험법(<http://public.leginfo.state.ny.us/lawsseaf.cgi>)

### 3) 자선기부연금조합

자선기부연금에 대해서는 많은 주에서 보험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뉴욕주 등 일부 주에서는 주 「보험법」에 기초한 규제·감독을 하고 있다. 즉, 자선기부연금에 대해서 보험에 해당한다고 하여 규제하는 주,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법」으로 규제하지 않는 주, 그리고 「보험법」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주로 나뉘어져 있다.



〈표 IV-14〉 자선기부연금(Charitable Gift Annuities)에 대한 적용 법규

감독 항목	각 주 보험법
감독관청	• 주 보험청
면허요건	• 보험청 장관의 특별 허가 - 10년 이상의 자선활동 이력(NY 1110(a)) - 책임준비금의 110% 상당의 자산(10만 달러 이상) (NY 1110(b))
조직형태	• 보험회사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NY 1110(a))
재무요건	• 특별한 규정 없음
상품의 규제	• 연금(연금계약서와 최저 연금률표의 제출, 최고 연금률은 50% 미만일 것)(NY 1110(a))
모집체계 및 규제	• 특별한 규정 없음
자산운용 · 투자규제	• 재산권한, 신탁업의 '신중한 투자자 기준'에 따를 것 (NY 1110(b))
책임준비금 적립	• 적립의무 있음 → 생명보험회사와 동일(NY 4217조)
공시	• 일반 보험회사와 동일(NY 307조)
감사 및 조사	• 일반 보험회사와 동일(NY 309조)
조기시정조치	• 일반 보험회사와 동일(단, RBC 기준에 기초한 개입 없음) (NY 7402조)

자료: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2004), p. 57.  
 뉴욕주보험법(<http://public.leginfo.state.ny.us/lawsseaf.cgi>)

NAIC에 따르면 전미 50개 주 및 콜롬비아 특별구 중 보험에 해당한다고 하여 규제하는 주가 뉴욕주를 포함한 9개 주이며, 주 「보험법」으로 규제하지 않는 주가 텍사스 주를 포함한 33개 주, 보험법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주가 9개 주이다. NAIC는 이에 입각하여 「자선기부연금모델법」과 「자선기부연금적용제외 모델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자선기부연금적용제외모델법」은 자선기부연금에 대해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첫째, 기부자(donor)에게 해당계약은 주 「보험법」상의 보험이 아니므로 보험청의 규제에 따르지 않고, 보험보호기구에 의한 보호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둘째, 본법 시행일 또는 최초의 자선기부연금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조직의 신원을 증명할 것 또한 해당 조직 및 계약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선기부연금조직 및 자선

기부연금계약의 자격을 갖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을 문서로 보험청에 통지해야 한다.

#### 4) 복수고용주 복리후생제도

복수고용주 복리후생제도에 대해서는 이전에 연방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할 우선권을 갖고 주법은 적용이 제외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복수고용주 복리후생제도가 「ERISA법」에 해당하는 것인지 상관없이 주 「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연방·주의 이중규제(dual regulation)로 되어 있다.

〈표 IV-15〉 복수고용주 복리후생제도(MEWA)에 대한 적용 법규

근거법	ERISA법, 각 주 보험법(CA 742.20조)
감독관청	연방정부, 주 보험청
면허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RISA법: 면허 불필요(단, 진정한 고용주 단체일 것)</li> <li>캘리포니아 주 보험법: 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 일정한 회원 수 및 종업원 수 이상, 5년 이상 활동 이력(CA 742.215, CA 742.24(a)~(c), CA 742.25조)</li> </ul> </li> </ul>
조직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RISA법: 조직 요건 없음</li> <li>캘리포니아 주 보험법: 비영리 상호급부회사(Non-Profit Mutual Benefit Corporations) 형태</li> </ul>
재무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RISA법: 특별한 규정 없음</li> <li>잉여금 400만 달러 이상(2007년 1월 시점 기준) 유지 의무 (CA 742.24조)</li> </ul>
상품의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명보험, 상해·의료보험, 연금 등(단체에 가입하는 고용주의 종업원 및 수급권자에게만 제공 가능, 요율 참고 신고)</li> </ul>
모집체계 및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명보험 모집인 자격자에 의한 모집(CA 742.24조)</li> </ul>
자산운용·투자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보험회사와 동일(CA 742.24조(p), CA 742.245조)</li> </ul>
책임준비금 적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립의무 있음(CA 742.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계리인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금액</li> </ul> </li> </ul>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방정부에 연차보고서 제출·공개</li> <li>주 정부는 일반보험회사와 동일(CA 742.26조)</li> </ul>
감사 및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방정부 및 주 정부의 검사권 있음(CA 742.31조, 742.32조)</li> </ul>
조기시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계리인 의견을 기초로 지급 상황 감시(CA 742.27조)</li> </ul>

자료: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2004), p. 58.

캘리포니아주보험법(<http://www.leginfo.ca.gov/cgi-bin/displaycode>)

5) 리스크 보유 단체

리스크 보유 단체는 연방법 차원의 근거를 갖고서 생겨났는데, 이것은 규제 및 감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리스크 보유 단체의 설립에 관해서는 「연방법」이 우선 적용된다. 둘째, 리스크 보유 단체가 설립한 보험회사는 50주 또는 콜롬비아 특별구 중 어느 한 곳에서 사업면허를 받지 않고 미국 전역에서 사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표 IV-16〉 리스크 보유 단체(RRG)에 대한 적용 법규

근거법	배상책임리스크 보유법(연방), 각 주 보험법
감독관청	• 주 보험청
면허요건	• 어떤 주에서 면허 필요 - 동종 리스크를 갖는 자의 인수(NY 5903조(a)) • 면허 취득 주 이외에서의 영업에는 신고가 필요 (1986년 법 2조 (a)(4), NY 5902조(o), NY 5903조(b))
조직형태	• 멤버가 소유하는 주식회사, 유한 책임 회사 (1986년 법 2조 (a)(4), NY 5902조(o), NY 5903조(e))
재무요건	• 특별한 규정 없음
상품의 규제	• 배상책임보험(개인 및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을 제외) (1986년 법 2조 (a)(4), NY 5903조(a))
모집체계 및 규제	• 보험모집인은 면허가 필요함(NY 5911조(c)) • 회원 자격이 없는 자는 모집 금지(NY 5905(b)) • 재무 상태가 악화된 RRG의 보험 모집 금지(NY 5905조(a), 1986년 법 3조 (a))
자산운용·투자규제	• 특별한 규정 없음
책임준비금 적립	• 면허 취득 주의 규정에 따름
공시	• 면허 취득 주 및 전체 영업주에 재무보고서 제출 (1986년 법 3조 (d))
감사 및 조사	• 면허 취득 주 보험청의 조사권 있음 (1986년 법 3조 (a), (NY 5904조(f), NY 5910조)
조기시정조치	• 주 보험청은 법원에 업무 정지 명령 요청권 있음 (1986년 법 3조(e), NY 5904조(g), NY 5912조)

자료: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2004), p. 58.

뉴욕주보험법(<http://public.leginfo.state.ny.us/lawsseaf.cgi>)

연방법에서는 리스크 보유 단체가 미국 전역의 적어도 1개 주의 「보험법」에 기초하여 설립되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리스크 보유 단체는 해당 면허 취득 주(chartering state)에 대해 「보험법」 규정에 기초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또한 담보조건, 요율체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및 실행가능조사(feasibility study)를 제출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면허취득 주 외 리스크 보유 단체가 영업하는 주에도 사업계획 및 실행가능조사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나. 기타 정책사항

### 1) 우애조합

연방소득세가 면제되며, 「보험법」상 다음과 같은 우대가 있다. 즉, 「NFCA모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취득한 우애조합은 자선적인 조합이기 때문에 부동산 및 사업소 설비 관계의 세금을 제외하고 모든 주, 군, 구, 시의 세금 및 학교세가 면제된다(「NFCA모델법」 제24조). 또한 뉴욕주 「보험법」에 따르면 면허를 취득한 우애조합은 자선조합이므로 부동산 및 사업소 설비 관계의 세금을 제외하고 모든 주, 군, 구, 시의 세금 및 학교세가 면제된다(NY4524조).

### 2) 리스크교환조합

NAIC모델법, 뉴욕주 「보험법」 모두에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리스크교환조합이라면 매년 이익을 각 회원에게 맞는 분배를 한 후에 과세된다.

### 3) 자선기부연금

자선기부연금을 제공하는 조직은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501조(c)(3)(m)에 따라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며,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수급은 비과세로, 기부한 부동산은 기부자 소유 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동산세가 경감되는 등 세법상의 이점이 있다.

#### 4) 복수고용주 복리후생제도

ERISA 및 NAIC모델법에서는 특별한 세제우대 조치는 없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보험법」에서도 복수고용주 복리후생제도를 특별히 세제상 우대하는 조치는 없지만, 복수고용주 복리후생제도는 캘리포니아 주 「회사법」상의 비영리 상호 급부회사이기 때문에 그 성격상 비과세되고 있다. 그리고 「내국세법」 501조(c)에 입각해 연방소득세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 5) 리스크 보유 단체

「NAIC모델법」에서는 면허 취득 주 이외의 영업주에도 납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NAIC모델법」 제4조(c), 뉴욕주 「보험법」에서는 리스크 보유 단체는 보험청에 원수보험료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NY 5904조(c)).

## 6. 일본

### 가. 공제 규제 제도 현황

일본에서는 협동조합의 공제사업과 공제회의 공제사업을 동일하게 보아 공제라는 명칭 하에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규모 공제인 전국공제농협조합연합회, 전국노동자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및 전국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공제가 발달하였다(〈표 IV-17〉 참조).

〈표 IV-17〉 협동조합공제 현황

법률명	주요 공제조직 및 회원(단체) 수		비고
	주요 공제조직	회원 수	
농업협동조합법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947	계통적으로 통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전국공제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	1,456	계통적으로 통일
소비생활협동조합법	전국노동자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57	계통조직 분립
	전국생활협동조합연합회	38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149	
	기타	331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전일본화재공제협동조합연합회 등	334	계통조직 분립
삼림조합법	전국삼림조합연합회	47	계통적으로 통일

자료: 日本共濟協會(2010).

이들 공제에 대한 규제는 1947년 대장성 주관으로 「보험업법」 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협동조합의 보험사업에 관한 법제화를 추진하였으나, 협동조합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어 1953년에 대장성은 「농협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보험업법」에 준하는 감독규정을 삽입하여 감독소관을 대장대신과 소장대신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의 보험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입안하였으나, 협동조합으로부터는 각 공제사업 주체의 특색을 무시하고 획일화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손보업계로부터는 감독권을 각 행정부처에 분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양측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 후 1970년대 후반 공제사업에 대한 규제 및 감독체제 정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지 못하였다.

〈표 IV-18〉 일본 「보험업법」상 포함되는 공제의 유형

기준	대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보험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소비생활협동조합법,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등)에 의한 공제</li> <li>• 건강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험</li> <li>• 중소기업퇴직금공제를 비롯한 임의가입의 각종 사회보험</li> <li>• 산림국영보험을 비롯한 각종 경제정책보험</li> <li>• 간이생명보험</li> </ul>
다음에 열거하는 것 (보험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재해공제 등 지방공공단체가 그 주민을 상대방으로 하여 하는 것</li> <li>• 회사 등이 임직원 등을 상대로 행하는 것(소위 기업 내 공제)<sup>1)</sup></li> <li>• 노동조합이 조합원 또는 그 친족을 상대로 행하는 것</li> <li>• 회사가 동일한 회사집단(하나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자회사 집단을 말함)에 속하는 다른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하는 것</li> <li>• 하나의 학교<sup>2)</sup> 또는 그 학생이 구성하는 단체가 그 학생 또는 생도를 상대방으로 하여 하는 것</li> <li>• 하나의 지연에 의한 단체<sup>3)</sup>가 그 구성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하는 것</li> <li>• 이상에서 열거하는 것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li> </ul>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것(보험업법 제2조 제1항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에서 1천 명으로 정하고 있음</li> </ul>

주: 1) 회사 등이 직접 행하는 것과 가입자가 임의단체를 만들어 행하는 것이 있음.  
 2)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 제1조에서 규정하는 학교를 말함.  
 3)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26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연에 의한 단체로서, 동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그런데 일본경제의 버블기였던 1990년대 들어 증가하기 시작한 무인가공제가 1990년대 후반 이후 급증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05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의 정의를 변경하여 공제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즉,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불특정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라고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제2조 제1항 제1호), “다음에 열거하는 것”(제2조제1항제2호), 그리고 “시

행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것”(제2조제1항제3호)으로 구분하여 포함시켰다(〈표 IV-18〉 참조).

이렇듯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근거법이 있는 공제’, ‘근거법이 없는 공제’, ‘무인가 공제’<sup>47)</sup> 모두를 「보험업법」의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선별적으로 「보험업법」 적용제외의 범위를 지정하였다. 즉, ‘근거법이 있는 공제’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제외했으나<sup>48)</sup>, ‘근거법이 없는 공제’, ‘무인가 공제’는 「보험업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무인가 공제의 범위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다음과 같은 공제군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① 비영리·협동의 자주공제, ② 영리사업으로서 행해지고 있는 공제사업(이하 ‘영리공제’라 함), ③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각종의 ‘互助會’이다.

한편 2008년에는 기존의 「상법」 ‘보험편’을 분리하여 「보험법」을 제정하였는데<sup>49)</sup>, 적용대상의 범위를 공제계약 등을 포함시켜 보험계약 일반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됨으로써 기존에는 보험자의 속성에 따라서 「상법」, 각종 공제의 근거법 등 규율하는 법률이 달랐으나 「보험법」에 의한 통일적 규율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 나. 기타 정책사항

일본의 법인격이 아닌 단체의 공제사업 과세에 있어서는 2004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2년 전의 소비세 과세대상 수익이 1천만 엔을 넘으면 그 연도는 과세 되고 있으며, 그 이하의 수익에 대해서는 면세된다. 즉, 과세 기준이 1천만 엔인 것이다. 또 소비세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대가를 얻어 실시하는 자산의 양도·역무 제공에 과세되지만, 「소비세법」상 공제 사업의 수익

47) 일본의 공제사업자들은 정확하게 ‘무인가보험’이라고 한다.

48) 무한정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 개정 「보험업법」 실시 이후 5년을 목표로 ‘근거법이 있는 공제’ 등을 포함하여 「공제사업 전체의 바람직한 모습」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押尾直志(2007), p. 6.

49) 2010년 4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은 보험 거래와 같이 소비세가 비과세로 되어 있다. 즉, 공제사업의 규모를 떠나 자주적인 공제 사업의 소비세는 비과세인 것이다. 또한 공제사업의 부금 수익 및 급부금도 소비세가 비과세 거래이며, 따라서 대다수의 공제사업 조직의 자주적인 공제사업은 소비세의 과세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공제 사업의 과정에서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대리점 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수익은 소비세 과세대상이며, 이는 역무 제공의 대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즉, 규모가 큰 대리점 사업이 있는 단체 등은 소비세의 면세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어 요주의라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수수료라 할지라도 단체연금계약의 사무 및 운영비 등과 같은 해당 사무비용은 부금 설계 시 포함되기 때문에 생명보험 회사에 불입하는 등의 형태에 대해서는 비록 수수료적인 수익이 있어도 소비세는 비과세로 된다. 그 이유는 부금 수익 자체가 소비세 비과세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체가 연합체적인 조직으로 전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공제 규약이나 공제 계약, 모집과 수금, 급부 실무와 실태 등 객관적으로 전반적인 운영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본부나 지부도 자주 공제 부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업 수익은 소비세 비과세로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공제사업의 세금 과제는 법인세의 수익사업과세이다. 노동조합 등의 공익 법인이나 법인자격 없는 단체는 법인세는 원칙으로서 비과세이지만, 「법인세법」으로 한정적으로 열거되고 있는 사업(물품 판매, 물품 대출, 대리, 청부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신고납세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한정적으로 열거되고 있는 수익 사업 안에는 보험업이 없기 때문에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의 신고납세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즉, 각 단체 등이 공제 계약자로부터 부금을 수수하여 공제 급부금을 지불하는 사업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제외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익은 소비세 비과세의 사무 운영비를 포함해 「법인세법」상의 수익 사업(대리업 또는 청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상당 규모의 수수료 수익이 있는 공제 단체는 법인세 신고의 필요와 불

필요 등의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원래 비영리의 사업 조직이기 때문에 수익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세 과세 사업으로부터 막대한 잉여금이 발생할 것은 없다.

## 7. 시사점

EU와 5개국의 공제사업에 대한 규제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공제조합에 대해서 여전히 유효한 역할이 요청되지만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본래의 의미를 잃고 기능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험에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여전히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로서 상호부조의 전통을 유지하는 공제조합이 수적으로는 다수이나 규모가 큰 일부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사업영역을 확대해가면서 그러한 특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과 그것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국가별로 그리고 조합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나서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생겨나고 있다.

어쨌든 공제조합이 공제사업을 확대해가면서 그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는 보험업에 대한 규제를 받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이는 공제사업을 보험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는 위험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 보고서에서 조사한 주요국의 경우 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한 기술적 측면에 대해서는 보험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제는 예외 적용되거나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감독체제와 관련하여 공제에 대한 감독은 법률체제와 마찬가지로 공조하는 체제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험감독당국에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보이는 것은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하는 공제에 대해 동일한 규제 및 감독을 함으로써 우선은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에 대한 규제가 공제에 대한 규제보다 더 체계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여

왔으므로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음으로써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유지에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감독자의 단일화 적용되는 법규의 단일화에서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규제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된다.

한편 공제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등은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경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혜택이 유지되고 있다.